

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40
----------	------

2024년 2월 29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
나. 제출일 : 2024년 2월 5일
다. 회부일 : 2024년 2월 7일
라. 상정일 :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24년 2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구종원 평생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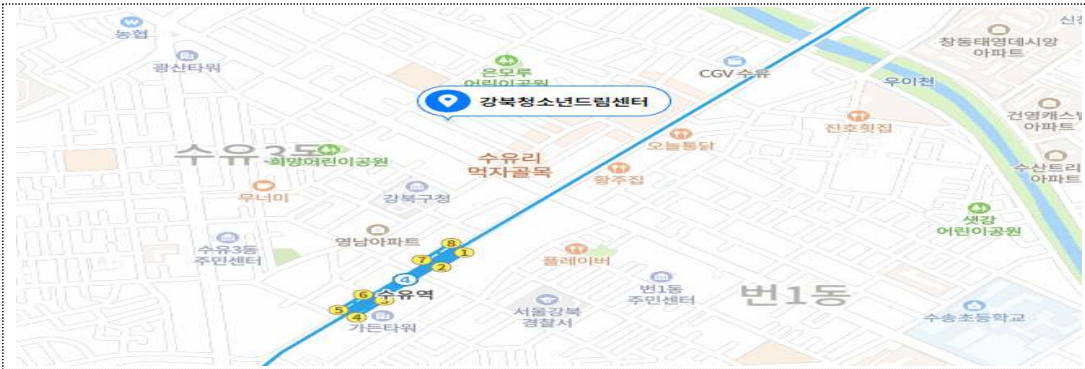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(현 시립강북 일시청소년쉼터)의 위탁기간이 2024.6.30. 만료 예정임.
- 청소년사업 관련 민간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(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)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청소년기본법」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42조의2
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, 제6조제1호
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 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위탁 사무 내용
 -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사업
 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 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 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 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 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40길 5-26
- 시설규모 : 지상 4층, (대지) 212.2 m^2 , (연면적) 333.37 m^2
- 주요시설 :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○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4. 7. 1. ~ 2027. 6.30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734백만원(2024년)
 - 인건비 518백만원, 운영비 49백만원, 사업비 167백만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가.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

-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(재위탁 3건)으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'민간위탁 조례')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음.

〈 제322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의안번호	시설명	구분	위탁동의안 개요
1640	강북청소년드림센터	재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강북구 한천로 140길 5-26 - 개관일자 : 2015.06.03. - 시설규모 : 지상4층 (333.37㎡) - 위탁기간 : 2024.7.1. ~ 2027.6.30. -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 - 소요예산 : 734,631천원
1641	망우청소년단기쉼터(여)	재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중랑구 송림길 156 - 개관일자 : 2015.01.01. - 시설규모 : 지상 2층, (483.12㎡) - 위탁기간 : 2024.7.1. ~ 2027.6.30 -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 - 소요예산 : 843,882천원
1642	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	재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성북구 길음로7길 20 - 개관일자 : 2015.4.1. - 시설규모 : 지하1, 지상2 일부(1,510㎡) - 위탁기간 : 2024.7.1. ~ 2027.6.30. -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 - 소요예산 : 305,633천원

※ 재계약 및 재위탁 [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]

- 재위탁: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
- 재계약: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

-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·복지·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, 법률(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제3항)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,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로 한정되고,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관리 등으로,
 -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경험(노하우 등) 등 활용하여,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(활동·교류·문화·교육·상담 등)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, 청소년시설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.
-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 3개소 모두 2024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,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(재위탁)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상황인바,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※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청소년시설”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※ '시설형'과 '사무형' 구분

- 시설형 위탁 : 행정재산(서울시 소유시설,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)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
- 사무형 위탁 :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

※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※ 민간위탁

-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,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,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.
-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,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세부내용 검토

- 본 동의안은 ‘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(이하 ‘총신대학교’)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(이하 ‘강북일시쉼터’)의 위탁기간이 만료(2024.6.30.)될 예정으로, 공모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(2024.7.1.~2027.6.30.)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〈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(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)
- 위탁 사무 내용
 -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사업
 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 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 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 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 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40길 5-26
- 개관일자 : 2015.06.03.
- 시설규모 : 지상 4층, (대지) 212.2㎡, (연면적) 333.37㎡
- 수용인원 : 10명
- 이용대상 : 9~24세 이하 남자청소년(가정 밖, 갈등가정, 해체가정 청소년)
- 주요시설 :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사무실 등
- 민간위탁기간: 3년(2024. 7. 1. ~ 2027. 6.30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- 소요예산 : 734백만원(2024년,인건비-518백만원, 운영비-49백만원, 사업비-167백만원)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강북구청 인근에 위치한 강북일시쉼터는 2014년(개관)부터 현재까지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상 4층의 시설로, 11명(정규직 6명, 비정규직 5명)의 직원이 7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,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에게 일시보호, 가정·사회 복귀, 자립지원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.

※ 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(차량)으로 나눌 수 있고,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가 주요 업무이며, 단기 및 중·장기(자립지원관 포함) 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
-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구축된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.

〈 2024년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인력현황 〉

(단위:명)

구분	총계	정규직								비정규직
		소계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계약직
정원	8	-	-	1	-	1	2	2	2	-
현원	11	-	-	1	-	1	2	1	1	5

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금 현황 〉

(단위:천원)

2024	2023	2022	2021
734,631	690,237	626,256	618,860

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〉

- 2014.8.14~2016.6.30. : 신규 (학)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
- 2017.7.01~2019.6.30. : 재계약 (학)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
- 2019.7.01~2022.6.30. : 재위탁 (학)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
- 2022.7.01~2024.6.30. : 재계약 (학)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

〈 2023년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사업추진 현황 〉

분야	사업명
목적사업	
보호사업	생활·긴급지원, 가출캠·독립가구 지원, 거리상담, 사이버아웃리치, 안심지킴이
상담지도사업	상담, 예술치료, 상담사례 슈퍼비전, 사례회의
교육문화사업	문화체육캠프, 진로체험, 토크데이, 동아리, 인권교육, 가출예방, 포럼 등
대외협력사업	지역주민나눔, 유관기관 협약, 실행/운영위원회, 자원봉사자 운영
홍보/특화사업	홍보, 청소년복지시설 정신건강 지원
특별지원사업	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쉼&맥터, 가정밖청소년 전통문화체험

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층별 공간 배치 현황 〉

구분	사용 현황
1층(105.66㎡)	프로그램실 : 주민개방, 교육프로그램 지원
2층(106.59㎡)	청소년쉼터, 샤워실, 식당/주방 : 보호, 휴식, 취식 등
3층(76.18㎡)	사무실, 상담실 : 시설 관리, 상담 등
4층(44.94㎡)	다목적실, 노래방, 집단상담, 각종 회의 등

- 강북일시쉼터의 명칭*은 여성가족부의 요청(2023년 5월)에 따라 변경(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→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)했으나, 이를 조례(「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상이한 명칭(조례상 명칭)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, 변경된 명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혼란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당 초	변 경	비 고
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	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	-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-1930(2023.5.26.)

※ 민간위탁 동의 심사 시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

- 민간위탁에서 위탁할 시설(재산, 시설명, 위치), 사무, 기간의 '특정'은 필수요소임.
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는 청소년시설의 명칭, 기능, 위치를 별표1로 정하고, 제10조는 별표1에 있는 청소년시설만 자치구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동의안은 '실제 사용하는 시설명'과 '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명'이 상이한 경우로, 평생교육국은 '실제 상용하고 있는 명칭'이 아닌 '조례 별표1에 규정된 명칭'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.

〈 청소년쉼터의 명칭 체계 〉

- 시설별로 상이한 청소년쉼터 명칭 체계를 일원화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, 제38조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쉼터임을 명시
- 명칭표시방법 : 지역 - 성별 - 유형 - 청소년쉼터
 - (예시)① 서울시립강남일시청소년쉼터(고정형), 대구시립일시청소년쉼터(이동형)
 - ② 서울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,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

출처 : 여성가족부, 2023 청소년사업안내 2권 197p 발췌

※ 여성가족부가 시립청소년시설의 명칭 변경을 요청한 이유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8조는 무허가 시설이 청소년보호시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,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을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. 그 이유는 위기 청소년들이 무허가시설을 공공시설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고, 위기청소년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거나,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.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8조(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(중략)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※ 여성가족부 명칭체계와 상이한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명칭

- 청소년정책의 변화(선도·교정·육성·수련→참여·활동·교류·복지·보호 등)에 따라 청소년시설도 다분화되어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, 서울시는 시설 간 협력체계를 강화(시설별 고유특성 유지)하거나, 일반 시설을 '통합 서비스 제공시설로 전환'을 추진했음.
- 2013년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·진료·쉼터·성문화 등의 기능을 통합한 드림센터(삼성동)를 개관했고, 2014년 본 센터(강북드림센터)도 설립하였으나, 현재까지 쉼터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18년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'센터'로 변경하고, One-Stop서비스 (활동, 복지, 보호 통합) 제공을 추진한 바(보라매, 창동, 광진 등)도 있음.

〈 2018 청소년 희망도서 서울 시행계획 〉

- ⑤ 청소년시설 혁신으로 청소년이 주인인 수련관을 개편(3-1-1, 3-2-1)
 - 청소년수련관을 종합지원센터로 기능 확대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활동·상담·보호·마을학교 등을 통합하여 One-Stop 서비스 제공

출처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, 2018 청소년 희망도서 서울 시행계획 4p 발췌

- 강북일시쉼터의 성과보고서(2022년 실적을 2023년도에 평가한 결과)는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보다 ‘시설·사업의 관리·운영’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, 사업평가도 주요 핵심사업(보호, 조기개입, 가정복지)이 아닌 보조사업(청소년 안심지킴이, 토크데이, 가출예방 교육, 사이버 아웃리치)만을 평가하여, 본 성과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산 효율성 확보(동일규모의 예산투입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)임을 고려해 볼 때, 목적달성 수단의 효율성과 사업 결과의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
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운영평가 개요 〉

- 수행기관 : 서울시(청소년정책과) 및 전문조사기관(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)
 - ※ 시립 청소년시설 평가체계 개선계획('20.9.23)에 의거 종합성과평가와 운영평가 일원화
- 평가기간 : 2022년도(2023년 6월 실시)
- 평가범위 :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※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
- 평가결과 : 평균 93.88점(100점 만점)

출처 :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보고서

- 강북일시쉼터의 보호기간이 최장 7일로, 청소년의 위기에 조기 개입, 가출 장기화 예방, 사회서비스 제공·연계 및 귀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나, 강북센터는 일시쉼터임에도 불구하고, 단기(3~9개월) 또는 중·장기 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(직업교육·진로체험, 문화·체육캠프, 전통문화체험, 가출팸·독립가구 지원 등)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,
 -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고, 보호기간(7일)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〈 일시청소년쉼터 운영모형 〉

이용대상	목적	서비스요소	활동내용	산출	성과
거리위기청소년 (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청소년)	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	현장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제공 건수 위생서비스 건수 피복제공 건수 의료서비스 건수 휴식제공서비스 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호인원 귀가인원 대안생활 시설 연계 인원 만족도(%)
	청소년 가출 및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한다	조기개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성 향상 지원 정서지원 거리아웃리치(상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성향상지원건수 정서지원 건수 거리아웃리치(상담)건수 	
	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한다	연계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정보제공건수 지역사회서비스연계건수 귀가지원 건수 지역사회교육 건수 	
① 노숙청소년 ② 배회청소년 ③ 가출, 귀가 반복 위기 청소년					

출처 : 여성가족부,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269p 발췌

- 강북일시쉼터의 운영은 일반 행정역량에 역량이 집중된 공무원보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특화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,
 - 본 센터의 제공 프로그램의 적정성, 공공시설의 운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는 평가방식 및 환류체계의 확보 등이 수반될 경우 민간위탁의 효과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5. 토론요지 : 없음.
- 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4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2월 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(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)의 위탁기간이 2024. 6.30. 만료 예정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(현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)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사업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40길 5-26
- 시설규모 : 지상 4층, (대지) 212.2㎡, (연면적) 333.37㎡
- 주요시설 :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4. 7. 1. ~ 2027. 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734백만원('24년)

- 인건비 518백만원, 운영비 49백만원, 사업비 167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은주 (☎ 2133-4131)